

[]용기
[]냉동기
[]특정설비

제조 변경등록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4일
신청인	상호	대표자 성명	
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)	전화번호	
	사무소 소재지		

변경사유	
------	--

변경내용	구분	변경 전	변경 후
	사업소의 위치		
용기등의 종류			
용기등의 제조 공정			
상호			
대표자 성명			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5조제1항 후단, 제5조의2제1항 후단,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[]용기 []냉동기 []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을 신청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부장관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	1. 용기(냉동기·특정설비) 제조등록증 2. 다음 각 목의 서류 중에서 변경되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서류 각 1부 가. 사업계획서 나. 정관(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며, 다른 법령에 따라 변경된 정관을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·냉동기·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) 다.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라.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(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 용기·냉동기·특정설비의 제조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	수수료 1만5천원
산업통상부장관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처리절차

신청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등록증 작성	→	등록증 발급
----	---	----	---	----	---	----	---	--------	---	--------

신청인

처리기관 : 산업통상부,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